

## 기후정의와 성경적 정의

송 오 식\*

###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II.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성경적 정의 탐색 |
| II. 기후정의의 의의 | IV. 결 어                    |

### 국문초록

기후변화는 이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전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우선선 위의 문제가 되었다. 본고는 기후변화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나 취약계층의 생존이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았다. 기후정의는 연혁적으로 환경정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통적인 정의론으로부터 기후정의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추출하여 그 중 배분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기후정의와 연관성이 있음을 논증하였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로 대변된다. 성경적 정의는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구약성경의 다수의 율법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명령규범과 금지규범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후위기로 인하여 고통 받는 자들도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취약계층인 현실에서 성경적 정의를 탐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성경 속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공의와 정의의 개념을 약자보호라는 측면에서 검토하며, 성경 속의 법과 제도를 다섯 가지 원리로 추출하고 그것이 현재의 법과 제도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기후정의를 위한 성경 속의 다섯 가지의 원리로는, 안식의 원리(십·축복·창조질서의 원리), 희년의 원리(치유·회복의 원리), 만나와 오병이어의 원리(잉여와 낭비·남용의 금지의 원리), 이삭의 원리(나눔의 원리),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문접수일 : 2021. 5. 20. 논문심사일 : 2021. 5. 25. 게재확정일 : 2021. 6. 10.

초대교회의 원리(나눔과 헌신·희생의 원리)를 들었다.

주제어 :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정의, 환경정의, 성경적 정의, 배분적 정의, 절차적 정의

## I. 문제의 제기

과학기술의 발달 이전 인간의 역사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현상과 기후에 적응하며 도전해온 역사이다.<sup>1)</sup>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 태풍이나 허리케인과 같은 폭풍우, 지진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큰 고통을 받아왔다. 그 만큼 인간에게는 자연이 극복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간은 인간이 개발한 문명의 이기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자연을 더 이상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지만, 무분별한 자원의 남용과 개발은 기후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를 기후위기로 인식하게 되었다. 기후위기문제는 근본적으로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이다.

기후위기의 문제는 오늘날 정의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2/3 정도이며 아프리카 대륙은 불과 3%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희생은 기후변화에 기여하지 않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로부터 시작된다. 세계에서 가난한 이들이 기후변화의 최대 희생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도시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들이 농촌과 어촌의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며 친환경적인 삶을 유지하는 이들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제 현대는 인류전체 공동체적 관점에서 기후위기를 바라보아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공동체는, 정확히 말하면 인류공동체는 공멸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로 대변된다. 성경적 정의는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구약성경의 다수의 율법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명령규범과 금지규범으로 이루어져 있다.<sup>2)</sup> 기후위기로

1) 본고는 종교문화학보 제17권 제2호(2020.12)에 게재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성경적 원리에서 해답을 찾다-」의 원고를 바탕으로 정의의 관점에서 기후정의와 성경적 정의에 대해 보충하고 가필한 것이다.

인하여 고통 받는 자들도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취약계층인 현실에서 성경적 정의를 탐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본고의 출발점은 과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고 상정하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이 현재의 기후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정립된 가치체계인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비롯된다. 다시 말하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미래세대에게 현재 수준의 환경을 물려주면서 지속발전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을가에 대한 회의와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이다. 전지구적 기후 행동을 위한 철학의 정립과 함께 ‘기후정의(Climate Justice)’<sup>3)</sup>에 입각한 가치지향적 정책 및 목표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본고를 작성하였다. 본고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관점에서 기후정의 개념을 탐구해 보고 성경적 정의는 무엇인지와 또한 성경적 정의와 관련하여 기후위기 대응방안과 정책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기후정의의 의의

### 1. 정의론

기후정의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익숙해졌지만 과연 기후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일치된 견해는 없다. 이는 정의란 개념만큼 기후정의 개념도 다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정의는 가장 중요한 도덕적 그리고 정치적 개념이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정의로운(just) 사람을 전형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정의개념에 접근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도 정의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이론적으로 논의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이었다.<sup>4)</sup> 그의 ‘동일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유명한 명제이다. 그는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었다. 하나는

2) 구약 성서 중에서도 율법서라 불리는 토라(모세 오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613개의 계명을 최초로 분류한 사람은 중세 시대의 유명한 랍비이자 사상가인 마이모니데스(Maimonides)이다. 그는 이 중 명령규범은 248개이며, 금지규범은 365개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3) 기후정의의 용어 사용 이전에 환경정의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기후정의와 환경정의는 이러한 점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

4) 정의에 대한 서양이론에 대한 상세는, Justice, Western Theories of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utm.edu), <https://iep.utm.edu/justicewest/#SH1b>

배분적 정의(distribute justice: 비례적 정의)로서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혜택과 부담을 나누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교정적 정의로서 어떤 상황에서 상실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공정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사회적 배분의 방법에서 그가 누려야 할 것보다 많거나 적게 불공정하게 혜택 또는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경우 법정에서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호혜성은 평등하기보다는 비례적인 것이어서 누군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불공정하게 적게 얻는 것과 다른 사람의 비용으로 불공정하게 더 많이 얻는 것 사이에 중간 위치를 포함하고 있다. 정의의 의미는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에 비해 너무 많이 얻는 것과 너무 적게 얻는 악덕 사이에 놓여 있고, 이것들은 두 종류의 반대되는 부정의인데 전자는 부적당(불균형)한 초과이고 후자는 부적당(불균형)한 결핍이다.<sup>5)</sup>

현대의 기후정의와 관련하여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정의론은 롤즈의 정의론이다. 그는 자유주의처럼 ‘공정한 절차’를 추구하면서도 그것이 정의로운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사회에서 정의를 획득하는 것은 기회의 확장과 자원 불평등의 감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주장하는 정의의 원리는 다음 2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둘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고, ②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하에서 모든 사람에게 직책과 직위가 개방되어야 한다. 사회에서 가장 약자에 속하는 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한다.

이러한 롤즈의 정의론의 시각에서 환경문제를 들여다보면, 자연으로부터 누리는 혜택의 공정한 분배는 물론 그 과정에서 야기된 환경적 부담까지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주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배상 주체가 명확하더라도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을 하는 접근방법을 취하도록 할 수 있다. 롤즈의 주장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회적 약자가 되어도 부당하게 받게 될 피해를 줄이면서 이익을 최대로 늘리는 제도 마련에 동의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하는 환경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사회적 저항이 약하다. 물론 롤즈는 자신의 정의이론을 전개할 때 기본적으로 자연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롤즈의 이론은 사회관계를 계약주의에 입각해서 설명하

5) Nicomachean, pp. 67-74, 76; 1129a-1132b, 1134a.

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를 반영하여 전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2. 기후정의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기후정의란 일반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로 기후변화를 바라보고,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정의의 개념, 특히 사회정의 및 환경정의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용어라고 인식한다.<sup>6)</sup> 여기에는 평등, 인권, 집단적 권리 및 기후변화에 관련된 역사적 책임 등과 같은 문제들도 검토될 수 있다. 기후정의는 기후변화협약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CBDR)’의 원칙과 환경정의 운동 및 이론에 기반한 국제적 수준의 기후정의 운동, 하계의 기후정의 및 윤리 논의로부터 영향을 받고 전개되어 왔다. 기후정의는 환경정의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기후변화 문제가 갖는 특징으로 인해 정의의 범주가 국가 간으로 확장되며, 해결의 주체 또한 개별국가를 넘어선 국가 간 협력체계를 강조한다.<sup>7)</sup>

정의란 개념을 고전적인 의미에서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가장 작은 자들이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기후정의의 핵심으로 보기도 한다.

기후정의와 환경정의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환경정의 문제는 1980년대 초반 미국에서 독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를 둘러싸고 유색인종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환경운동을 통해 처음으로 제기된 후 주로 미국의 연구자들에 의해 조명을 받았던 이슈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학술적 연구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의 주요의제로 다루어졌고,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환경정의를 담보하기 위한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sup>8)</sup>

환경정의의 개념도 학자마다 다르고 정부의 공식기관마저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나 학계의 정의로써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브라이언트(Bunyan Bryant)의 정의이다. 그는 환경정의란 “사람들이 자신이 환경이 안전하고, 보육적이며, 보호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문화적 규범과 가치, 규칙, 규정, 행동, 정책 및 의사결정을 지칭한다”고 하면

6) 기후 정의는 이제 지구적 정책 무대에서 사회학자, 철학자, 법학자 등 많은 상이한 행위자들에 의하여 사용되는 학제간 용어이기도 하다.

7) 한상운 외,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I),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3. 2면.

8) 박재묵, 환경정의의 개념의 한계와 대안적 개념화,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10권 2호, 2006.12, 76면 이하.

서, 사람들이 주의(isms)를 경험하지 않고도 최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을 때, 환경정의가 제대로 실현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1995년에 「전국 주입법부 회의」의 「환경정의 연구모임」은 환경정의란 인종, 소득, 문화 또는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환경적 위해나 건강 위해로부터 평등한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sup>9)</sup> 표준적 정의로 미국 환경보호청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드는데, 공정한 처우와 함께 의미 있는 참여를 동시에 강조하는 쪽으로 정의를 바꾸었다. 즉 환경정의는 환경법, 규정 및 정책의 개발, 시행 및 집행과 관련해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또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들이 공정하게 처우 받고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이라고 한다.<sup>10)</sup>

한국에서는 2018년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에서 환경정의 개념을 최초로 반영하여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같은 법 제2조에서 ‘기본이념’이란 제호하에 환경정책 결정과정의 참여와 정보 접근권 보장, 환경 혜택과 부담의 공정한 배분 등을 명시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공정한 구제 보장으로 명기하고 있다.

기존의 주류학자들의 환경정의 개념의 한계로 ① 인종 및 계급변수에 대한 과도한 집착, ② 지역사회의 물신화, ③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에 대한 과도한 강조를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적 개념화의 성과로 ① 보호받을 권리 주체의 확장, ② 생산적 정의, 실질적 정의, 승인적 정의 등의 도입을 통한 정의 개념의 확장이 지적되기도 한다.<sup>11)</sup>

기후변화는 세 가지 이유에서 정의 이슈가 있다. 첫째, 그 원인은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 야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부정의는 불평등에 의해 야기된다. 대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소외된 집단과 국가들은 훨씬 적은 화석 연료기반 에너지를 사용한다. 둘째, 부자와 빈자들은 그것의 영향을 불평등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팩트이다. 셋째, 기후변화를 관리하도록 설계된 정책-재생에너지, 대응조치, 지구공학계획을 포함한-들은 사회 내에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강하게 불평등한 영향을 가져오는데의 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된 자들이 배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정의와 마찬가지로 기후정의의 개념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위하여 실질적 정의(substantive justice),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sup>12)</sup> 또는 교정적 정의

9) The Environmental Justice Group, 1995:vii

10) <http://www.epa.gov/compliance/basics/ej.html> 참조.

11) 박재복, 위의 논문, 76면.

(corrective justice) 그리고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 형식적 정의(formal justice)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sup>13)14)</sup>

첫째, 실질적 정의이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적극적인 통제를 하여 기후 위험의 재산을 억제하고 복원력을 구축하여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종이나 성별, 소득, 문화, 특정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과 무관하게 환경위험으로부터 평등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실질적 정의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면서 자신의 미래를 몰수당한 지구의 다수에게 영구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고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 주장은 기후변화 논쟁의 중심에 있다.

둘째, 분배적 정의 또는 교정적 정의이다.<sup>15)</sup> 분배적 정의는 사회 구성원 간에 편익(benefit)과 부담(burden)을 도덕적으로 정당하게 할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분배적 정의는 사회정의의 핵심적 요소로 여겨져 왔다. 기후정의와 관련하여서는 기후변화를 야기한 책임과 그로 인한 피해간의 불일치를 교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A국이 B국에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활동을 한 경우에 A국은 그러한 해로운 활동을 중단하고 B국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행위자와 영향을 받는 당사자,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한다. 문제는 어떠한 제도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를 주는 활동을 중단시키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는가이다. 이러한 분배적 정의에 입각한 주장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발전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절차적 정의이다. 기후변화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sup>16)</sup> 기후변화를 전지구적 연대가 필요한 전지구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문

12) Rawls는 사회에서 정의를 획득하는 것은 기회의 확장과 자원 불평등의 감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배적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하나는 기회의 공정한 평등의 조건 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직위와 직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에서 가장 유리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가장 큰 혜택(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13) Stephen Humphreys, *Competing Claims: 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 in Stephen Humphreys (ed.), *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40. 이에 대한 소개로서 국내문헌으로는, 박병도,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정의, 환경법연구 제35권 2호, 2013.8, 78-80면 참조.

14) 기후정의의 구성요소를 배분적 기후정의, 절차적 기후정의, 생산 기후정의, 승인 기후정의로 구분하기도 한다. 한상운, 환경정의의 규범적 의미, 환경법연구 제31권 제1호, 2009, 331면 이하.

15) 환경철학자 웬즈(Peter S. Wenz)는 대표적 저술인 환경정의(Enviornmental Justice, 1988)는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환경정의를 다룬 대표적인 저술이다.

제라고 생각한다면 정의문제는 다르게 보인다. 특히 기후변화영향은 단지 가난한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미친다. 기후변화문제를 다루는데 드는 비용을 누가 얼마만큼 지불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부담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 절차적 정의는 공정한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상이한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이익을 공정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로 취해진 조치를 보장할 수 있는 기제를 세우는 것이다.

넷째, 형식적 정의 또는 법의 지배이다. 패를만은 모든 정의형식에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형식적(추상적)정의라고 한다. 이는 곧 동일한 본질 범주에 속하는 존재들은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기후변화에 대하여 이전의 사용으로부터 빼앗긴 권리(entitlement)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서 탄소집약적 경제가 명백하게 위법을 하지 않고도 지구환경에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논의를 시작한다. 처음 탄소집약적인 경제가 등장하였을 때 그것이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안고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 현재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탄소집약적 경제에 의존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책적 목표를 위해서도 자의적으로 철폐될 수 없는 합법적인 권리가 탄소 사용자들 가운데 생긴다. 오염자가 자신이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포기한 것이라면 배상은 오염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최소한, 그는 어떤 해결책에 대해 결정적인 발언권이나 거부권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오염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도를 형성하는데 오염자의 주장이 더 강해진다. 이것이 바로 기후변화에 관한 형식적 정의 또는 법의 지배의 시각이다. 이것은 해당 문제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현행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행해진 당시에 합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 이것의 강점은 엄격한 법적 정확성(legal rectitude)뿐만 아니라 모든 온실가스 감축체제가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행위자들에 대하여 광범한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분배적 정의를 환경문제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적하는데 하나는 재분배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다른 하나는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경제 영역에서는 분배적 정의가 부의 재분배를 통해 실현될 수 있지만, 환경의 맥락에서는 재분배가 거의 의

16) 절차적 정의와 관련한 절차적 권리는 정보에의 접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공공참여, 사법절차에의 접근을 바탕으로 한다. 조운재, 기후변화와 인권- 환경파괴 상황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 2019, 외법논집 제43권 2호, 125면.



미를 갖지 못한다고 한다. 오염물질이나 위험의 재분배는 분배 대상의 성격상 재분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분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라는 환경정의의 근본목적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한다. 부담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환경정의의 기본이념의 실현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독성 폐기물 등이 형평성 있게 분배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환경 및 건강 위해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고 한다.<sup>17)</sup>

이러한 4가지 정의에 관한 담론은 기후변화 논쟁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다양한 시각이 다양한 주장자들에 의해 선호되고 있다. Henry Shue에 의하면, 다음 4가지 문제에 대하여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과 정의는 깊은 관련이 있다. ① 아직까지 피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의 공정한 할당(fair allocation)은 무엇인가? ②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의 공정한 할당은 무엇인가? (3) ① 그리고 ②와 같은 이슈에 관하여) 공정한 과정이 될 수 있는 국제적 협상(international bargaining)에서 어떠한 근거에 기준한 부의 배분을 할 것인가? (4) 온실가스배출의 공정한 할당은 무엇인가?

지구공통의 문제에 대하여 영향을 받는 지구공동체의 맥락에서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결국 위와 같은 논의에서 비용과 편익의 할당을 강조하는 내용의 배분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는 중요한 요소이다.

### 3. 소 결

기후정의의 개념을 정립함에 있어 이제 지역적인 문제나 한 국가만의 문제에 천착하여 그것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되었다. 이 점에서 환경정의에 대한 기존 주류학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① 인종 및 계급변수에 대한 과도한 집착, ② 지역사회의 물신화를 든 것은 일응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에 과도한 강조에 대한 비판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친 집단에게 부담의 공평한 분배를 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기후정의는 개인주의 내지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간의 공정과 공동체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

17) 박재묵, 환경정의의 개념의 한계와 대안적 개념화,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10권 2호, 2006.12, 98면 이하.

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의 신장에는 이바지하였지만, 공동체적 정의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다만 John Rawls의 분배적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인 (1) 기회의 공정한 평등의 조건 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직위와 직책으로의 연결, (2) 사회에서 가장 유리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가장 큰 혜택(이익)이 되어야 하는 것은 기후 정의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방향제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약자보호를 정의 내기 공의라고 있는 성경적 정의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III.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성경적 정의 탐색<sup>18)</sup>

성경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로서 작용한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이다. 하나님의 정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며 공동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sup>19)</sup> 메시아는 이방에 정의를 베풀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는 분이다(이사야 42:1-4). 오늘날의 기후위기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산업혁명 후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선진국들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세계 인구의 약 18%에 정도에 지나지 않는 북반구 선진국이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70%를 배출하고 있다. 대기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는 에너지 뿐만 아니라 자원의 사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주요한 이유는 ‘선진 산업국의 경제활동’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 나라에서도 에너지 및 환경문제에서 불평등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오늘날 ‘기후정의’란 개념이 등장하였고 취약국가 국민들의 삶을 선진국 국민들의 삶과 대비시키면서 기후정의의 회복을 부르짖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성경 속에서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혜를 찾고자 한다. 그 작업은 ‘성경적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추구이다.

18) 이 부분은 줄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성경적 원리에서 해답을 찾다, 종교문화학보 제17권 2호, 2020.12, 87면 이하의 내용을 보충하고 현재의 법과 정책을 소개하였다.

19)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마르셀 모스(Marcel Mauss)는 「증여론」에서 공동체는 증여의 은총으로 존재하며, 인간은 본래 공동체적 존재라고 한다. 원시사회에서부터 증여를 통하여 공동체의 유대가 형성되고 있다.

## 1. 안식의 원리 : 쉼, 축복, 창조질서의 원리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지만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며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사이에 존재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창 1:28).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좋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잘 다스리도록 위탁함과 동시에 명령하였다. 따라서 인간은 이 세상에 대한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먼저 안식의 원리를 안식일 규정으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엿새 만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으며, 또한 사람들에게도 엿새 동안에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소와 나귀가 쉬는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출 23장 12절)고 하셨다.<sup>20)</sup> 안식일에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휴식하도록 한 것이다. 안식의 근본적 의미는 ‘쉼’에 있으며 이것은 계속되는 일이나 노동으로부터의 멈춤과 휴식을 나타낸다. 이러한 안식은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근거한 제7일의 쉼을 나타냈으나 인간타락 이후 계시의 점진성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에 관계된 영육간의 행복으로서의 안식을 의미하게 되었다. 또한 기독교론적으로 안식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영육간의 완전한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안식일 규정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종교법으로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규범으로서 역할이다. 남종이나 여종에게도 일을 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휴식을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창조사역의 본질은 일과 안식이다. ‘노동과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원리인 동시에 바로 인간세계의 원리이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우주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도 일과 안식의 균형이 중요하다. 출애굽기 제23장 12절은 종교규범이면서 사회규범으로서 안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안식일을 제정한 이유는 ‘쉼’(샤바트)과 ‘축복’(바라크)과 ‘거룩’(카다쉬)과 나눔에 있다.<sup>21)</sup>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자유

20) 이러한 명령을 이른바 야훼의 특권법 혹은 제의 십계명이라고도 한다. 7일 주기의 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하경택, 구약성경에 나타난 안식일 법 - 하나님 닮아가기(imitatio Dei)로서의 안식일 준수, Canon&Culture 제14권 2호, 2020년 가을, 89면 이하.

21) 최종호, 안식일에 대한 신학적 성찰, 신학사상 2008년 겨울호,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와 해방, 쉼,<sup>22)</sup> 치유, 축제, 하나님 앞에 동등한 인간의 권리를 상징한다. 안식은 그저 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창조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안식의 그리스어는 *anapauso*인데 창조질서에 그대로 맡기는 것을 말한다.

출애굽기 제23장 본문은 사회 정의와 사회 복지에 대한 법규이다. 이 이외에도 신명기에서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잊어버리고 거두어들이지 않은 단을 다시 가서 취하여 와서는 안된다(신 24:19)라는 규정도 나눔의 정신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규정이다. 사회정의를 추구해 나가는 일은 개개인의 올바른 도덕과 공정한 처신을 기초로 한다(1-9절). 그리고 사회복지 구현해 나가는 일은 경제적 고통과 압박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따뜻한 배려를 해줌으로서 이루어진다(10-12절). 결국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정점으로 하여 공동체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3절)는 것이다.

다음으로 안식의 원리를 안식년 규정으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다.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안식년에 대한 규례이다. 이 규례의 목적은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례이다. 가난한 자들이 땅을 경작하여 수확하여 살도록 한 규례이다. 사회복지차원의 율법이다. 더 나아가서 들짐승까지 배려하는 규정이다. 오늘날에도 포획과 남획을 금지하는 법률들이 존재하는데 이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과의 공존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오늘날 자연보호와 환경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미 명령하신 율법정신 속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원리가 제대로 구현된 곳이 있다. 바로 휴전선이다. 1953년 전쟁의 포화가 멈춘 후 사람의 발길이 미치지 못한 지 70년이 다가오자 휴전선 안에서는 놀랍게도 생태계가 복원되고 한국 내에서 종의 다양성이 제일 확보가 잘 되고 있다고 한다. 놀랍게도 쉼의 원리가 적용되는 곳에서 창조질서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제도적으로 이러한 안식의 원리를 도입한 제도가 자연 휴식년제이다. 자연휴식년제는 오염이 정도가 지나치게 심각하거나 황폐화할 염려가 많은 국공

---

2008.12., 141면.

22) 여기서의 쉼은 단순한 휴식의 의미가 아니라 정신적 평안함, 영적인 내려놓음, 살림의 의미로서의 쉼이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하고 하신 맥락에서의 쉼이다.

립 공원에 한해 3년 동안 사람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막고 복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같은 제1항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국유 또는 공유외의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제도보장을 근로기준법에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휴일을 주는 경우에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고(제2항),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제56조). 또한 근로시간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제69조). 또한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제74조 제1항).

오늘날에는 근로자의 휴식을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인식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연소자와 여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 2. 희년의 원리 : 치유, 회복의 원리

### 1) 희년의 의미

희년(jubilee, 히브리어: יובל, yobel)은 안식년 7년이 7회 반복되는 해, 곧 50년째가 되는 해이다.<sup>23)</sup> 레위기 제10장과 제25장에는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너희는 각자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23) 희년에 관한 참고문헌으로는, 조현정, 희년(안식년)과 토지공개념, 기독교사상 723호, 대한기독교서회, 2019.3, 116면 이하; 정용한, 기본소득 논의를 위한 성서적 제안 : 공관복음서의 희년과 하나님 나라 운동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95호, 연세대학 신과대학, 2019.3, 251면 이하; 정중호, 희년공동체와 한국: 노비해방, 채무면제,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1권 1호, 한국구약학회, 2015.3, 93면 이하; 이사야, 구약의 땅과 사회윤리: 안식년과 희년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32호,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5, 277면 이하; 박승탁, 희년에 나타난 기독교 사회복지사상의 현대적 의미, 신학과 목회 39호, 영남신학대학교, 2013, 315면 이하.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거룩함이라고 한다. 희년은 한 마디로 잃었던 땅과 신분을 회복하는 해이다. 50년째 되는 10월 15일에서 22일까지 7일간 지키는 장막절(수장절)에 희년의 제사가 거행된다.<sup>24)</sup> 이 희년(The year of Jubilee)의 의미는 억눌리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자유와 해방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적 의미와 아울러 사회적,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 출애굽기 21장 1-11절, 레위기 25장, 신명기 15장 12-18절과 에레미야 34장 8-22절 등에서는 안식년과 안식년의 일곱 번째 되는 희년에서의 ‘자유계약’을 문제 삼는다. 이러한 말씀들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종들의 자유를 선포하는 노예법을 다루고 있는 반면 레위기는 보다 포괄적인 다루고 있다. 즉 ① 인간과 생태계에 관계된 안식년제도(25:2-22) ② 개인 소유권과 보상권(25:23-28) ③ 성 밖의 가옥에 대한 희년반환청구권(25:29-34) ④ 빚진 종의 자유를 위한 노예해방법(25:35-55)이다.

우리말 성령에 희년(禧年)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명칭은 네 개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는 ‘희년’, 오십년마다 돌아오는 해, 자유의 해 그리고 은혜의 해이다. 이러한 각기 다른 호칭은 시대나 공간의 차이로 생긴 것이 아니다. 희년의 기능에 따라 붙여진 명칭은 다르지만 의미는 동일하다. 희년은 히브리어 요벨의 음역된 라틴어 jubilaeus(환호성)의 유래를 따라 기쁨 희(喜)자를 사용한다. 실제 요벨(Jobel)이란 단어는 ‘수양의 뿔’ 혹은 ‘나팔’이라는 뜻을 지닌다. 산양의 뿔로 만든 나팔은 50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희년에 사용되었다. 요벨의 해에는 딸에게 상속된 땅도 결혼 후에는 남편이 속한 지파의 기업에 귀속되며(민 36:2-4), 땅을 매매하는 경우도 요벨의 해를 기준으로 정해서 남은 햇수 만큼은 그 값에 상당한 액수를 감해주어야 한다(레 27:18). 또한 땅을 판 사람 마음대로 값을 올리거나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sup>25)</sup> 요벨을 희년으로 부르게 된 것은 이런 양각 나팔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해에 불리워졌기 때문에 이 악기 이름을 따서 ‘요벨’ 혹은 ‘요벨의 해’로 부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sup>26)</sup>

두 번째는 50년마다 돌아오는 해(The fifty years)를 말한다. 레위기 25장 10-11절에 두 번 나오는 용어로서 출애굽한 후 오십년째 해에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한다. 50년 단

24) 이사야, 위의 논문, 286-287면 참조.

25) 김은홍, 토지 공개념의 기초로서 희년법과 지공주의의 관련성에 대한 고찰, 한국개혁신학, 69, 2021, 66면.

26) 강사문, 희년법의 성서적 의미, 장신논단 6, 1990, 151면.

위의 시간 구분은 7년 단위를 기초로 한 농경사회의 시간구분으로 안식년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안식년에는 하나님과의 계약(언약)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타인의 노예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채를 면제하여 경제적 평등사회를 꾀하려는 안식년 법을 더욱 더 강화하여 오십년 되는 해에는 인간의 기본권을 되찾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이다. 50년에 한 번씩 원상회복을 한다는 의미에서 ‘50년 되는 해’란 용어가 유래되었다.<sup>27)</sup>

세 번째는 자유의 해(The years of Freedom)를 말한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하드로르’를 공동번역에는 ‘되돌리는 해’로 번역하고 있다. 드로르는 에스겔서 46장 17절에 단 한 번 사용된 단어로서 ‘자유’나 ‘해방’을 뜻한다. 계약법전(출21-22)에서는 노예가 해방될 때는 드로르 대신에 자유란 의미의 호프쉬가 사용되었다.<sup>28)</sup> 네 번째는 은혜의 해(The years of Favor)를 말한다. 은혜의 해는 이사야 61장 2절에 한 번 나타난다. 은혜란 단어는 드로르 (자유)란 단어와 병행하고 2절 상반 절 후반부의 구원의 날과도 병행된다.<sup>29)</sup> 모든 거주자들에게 ‘드로르(자유 또는 해방)가 선포되면 빛 때문에 토지나 가옥을 팔았던 농민들은 그 기본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되며 웅색하게 되어 몸을 팔아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다. 은혜의 해에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옥에 갇힌 자와 슬픔에 있는 자들이 기쁨을 누리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 이는 신약의 예수에게서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에서 나타난다. 은혜의 해는 경제·사회적인 측면보다 종교적인 측면에 더 비중을 두는 표현이다.<sup>30)</sup>

이처럼 50년의 해에 소유의 환원과 노예해방을 선언하는 것은 5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고 그것이 한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간혹 그

27) 강사문, 앞의 논문, 151면.

28) 두 단어의 사용의 차이점에 대해 호프쉬는 경제·사회적인 측면의 회복이며, 반면 드로르는 죄에서 구원받는 종교적 측면을 나타낸다고 한다. 강사문, 희년법의 성서적 의미, 장신논단 6, 1990, 152.

29) 김은홍, 앞의 논문, 66-67면.

30) 강사문, 위의 논문, 154면.

리한 사회적 경제적 격차가 사람들의 능력으로 야기되었을지라도 기득권 내지 기존 질서를 환원함으로써 성경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 2) 희년제도의 내용과 특징

희년제도는 매우 독특하였다. 희년의 특성은 나팔, 자유, 희년과 희년 사이의 49년 동안은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었다. 땅을 사고 팔 수도 있었다. 다만 토지를 매매할 때는 본래의 소유주가 언제든지 그 토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이 계약상에 인정되어야 한다.<sup>31)</sup>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자기 땅을 팔았을 경우에는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야 하며 그 땅을 다시 살 친척이 없으면 후에 돈을 벌어서 자기가 판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는 다음 희년까지의 남은 햇수를 계산하여 그 남은 햇수에 해당하는 돈만 치루고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판 땅을 다시 살 능력이 없으면 그는 자기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희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했다.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토지의 소유권은 가나안 정착 시에 분배받은 원래의 지파에게로 돌려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잃어버린 부의 재분배가 일어난 것이다. 적어도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했던 것이다. 희년법에서 토지의 소유에 대한 관념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레위기 25:23)라는 말씀에서 드러난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러한 희년제도의 원리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한 자녀라는 넓은 의미의 가족공동체라는 데서 비롯된다. 희년의 근거는 안식년에 있고, 안식년의 출발은 안식일이다.

안식년과 희년에 나타난 토지사상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하나님 야웨 앞에서의 공동체의 평등사상을 잘 보여준다.<sup>32)</sup>

또한 만일 너희 동족이 가난하여 너희에게 몸을 팔거든 너희는 그를 노예처럼 부려먹지 말고 품꾼이나 잠시 너희 집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여겨 희년까지 만 너희를 섬기게 하라. 희년이 되면 그와 그 자녀들은 너희를 떠나 그의 가족과 조상의 소유지로 돌아가게 하라고 한다. 희년의 원리는 인간의 본능적 탐욕에 대한 제도적 관여로서 ‘자유와 회복의 원리’이다. 신분이나 소유에서 전적으로 종전

31) 오늘날 자금유통을 위한 환매권 제도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할 권리를 유보하고 매도하는 것과 유사하다.

32) 이사야, 앞의 논문, 259면.



의 모습을 회복함으로써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유사 이래 획기적인 원리이다. 구약이 말하는 땅과 사회윤리적 관심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시대에도 고정된 옛 사상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과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 3) 희년제도의 현대적 적용

희년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토지공개념’<sup>33)</sup>과 기본소득제도가 있으며 오늘날 사회보장제도로써 기초수급제도와 실업급여제도등도 구약의 희년 제도와 그 가치면에서는 공통적이다. 토지공개념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헌법에서 사유재산제도의 보장과 함께, 이러한 재산권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헌법 제23조 제2항), 토지거래에 투기적인 거래로 인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개발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또한 최근에 도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는 기초생활이 안 되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부의 재분배라는 점에서 희년제도가 추구하는 성경적 정의와 궤를 같이한다. 기본소득제도는 선별적 복지제도가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복지가 진정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격론이 벌어지는 것은 이른바 포퓰리즘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한 근로자의 근로의욕 상실과 함께 남미의 베네수엘라처럼 국가의 경제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실제 성경에서의 희년제도는 실제 이스라엘에서조차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토피아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sup>34)</sup> 가장 이상적인 성경적 정의에 합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33) 이에 대한 소개로는, 김은홍, 토지공개념의 기초로서 희년법과 지공주의의 관련성에 대한 고찰, 한국개혁신앙 69권, 한국개혁신학회, 2021, 61면 이하.

34) 실제 기본소득제는 15세기 사상가인 토마스 모어에게서 그 아이디어를 찾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밀턴 프리드먼의 마이너스 소득제가 유명하다. 실제로 1970년대 소득보장이라는 정책으로 미국 닉슨 대통령이 입법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 3. 만나와 오병이어의 원리: 잉여와 낭비·남용의 금지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다.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심으로 광야를 지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 가족 수대로 한 사람 앞에 약 2리터씩 거두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으나 거둔 것을 측량해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각자 필요한 만큼 거두었고, 모세는 그들에게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라고 하였으나,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 두었는데, 다음 날 보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거두었으며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녹아버렸다.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만큼 내려주시는 은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나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갈릴리 호수 근처 들에 있을 때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성인 남성만 오천명이 모였는데, 오직 한 아이의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밖에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고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로 감사기도를 하고는 제자들에게 이를 분배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했다. 그런데 이것으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광주리에 담았더니 열두 광주리가 되었다. 이에 대한 해석은 후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적이 남용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갚으며 남은 것들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나와 오병이어의 원리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심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고도의 이윤추구와 생산의 잉여, 자원의 낭비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깨우쳐준다. 오늘날 선진국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의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전세계에서 생산되고 나서 먹지도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의 가치가 4천억 달러(43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영국 정부의 환경·자원 자문기구인 ‘폐기물·자원 행동 프로그램’(Wrap)의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크게 늘고 있어 심각한 경제·환경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먹지도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이 전 세계 음식물 총량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FAO)는 전 세계 선진국에서 그냥 버려지는 음식물로 기아에 허덕이는 전 세계 8억 7천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막대한 규모라고 지적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는 경제적인

비용 손실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잉여와 낭비 남용의 금지 원리는 오늘날 여러 제도로 나타나고 있다. 즉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있다. 즉 동법은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대한 국내법의 적용으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제도적으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4년 4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가 획기적인 최초의 시도였다. 2010년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2016년 제정 「자원순환기본법」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최근에는 1회용품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거나 시행되고 있다. 비닐백이나 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 일회용 빨대 사용금지, 일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 제공금지 등이 그러한 예이다.

#### 4. 이삭의 원리: 나눔(증여)<sup>35)</sup>의 원리

룻기 2장과 3장에 보면, 모압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둘째 며느리 이방인 룻과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효성이 지극한 룻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삭을 남기는 이스라엘의 사회복지 전통(고엘)에 따라 일꾼들이 일부러 떨어뜨린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봉양한다. 여기서 구약시대의 고엘제도가 나눔의 원리에 대한 중요한 제도로 등장한다. 구약시대 고엘제도는 희년제도와 맞물려 있는 이스라엘 사회보장제도였다.<sup>36)</sup> 고엘 (גֹּאֵל)은 히브리어 음역으

35) 증여의 원리는 인류역사 속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프랑스 사회학자 모스는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실천으로 이끄는 인간 동기는 모순되게도, 자유와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상세는, 마르셀 모어의 증여론, 증여의 사회학적 본질과 기능 그리고 호혜성의 원리에 대하여, 문화화 사회 7권, 한국문화사회학회, 2009. 11., 9면 이하.

36) 고엘에 대한 소개로는, 김수정 외, 고엘, 교회에 맡겼다-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성서적 모델, 홍성사, 2014.

로서 기본적으로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는 의미를 가진 ‘가알’에서 온 말로서 근족, 기업 무를 자, 계대를 이어줄 자, 복수해줄 자 등을 의미한다. 즉 고엘은 보상할 자, 회복할 자, 구속할 자, 보복할 자라는 뜻이다(레 25:25, 룻2:20, 3:9,12, 4:3, 민 35:12).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움 당한 자를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sup>37)</sup>

그런데 룻이 이삭을 줍던 곳 그 밭의 주인은 우연하게도 친척인 보아즈였고, 그는 일꾼들에게 룻에게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줍게 하고 조금도 나무라지 말며 가끔 곡식단에서 조금씩 뽑아 룻이 줍도록 버려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한다. 실제 보아즈는 이스라엘의 전통인 고엘에 따라 룻에게 밭에서 수확하고 남은 이삭을 줍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줍게 하여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하나님은 산 자나 죽은 자에게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는구나”라는 말을 하게 한다.

나눔에 대해서는 신약에서도 예수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나온다.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자를 ‘의인’이라고 칭한다(마 25:31-40). 성경적 정의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나눔을 통해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심화로 오늘날 빈부의 격차가 유사 이래로 가장 극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자본과 정보의 집중과 다국적기업의 출현은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 부자와 빈자의 간극을 더 넓히고 있으며 그 지위의 고착을 심화하고 있다. 룻기에서 보이는 보아즈의 나눔의 정신은 국가간 혹은 국내에서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된 법률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후자는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데 이를 통하여 민간의 단체가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공익활동을 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눔의 원리의 실천 예로서는 ‘아름다운 가게’를 들 수 있다. 정책적으

37) 고엘에 해당하는 가까운 친족이 가지는 의무와 권리는 크게 3가지이다. ① 사람이 가난하여 땅을 팔았을 경우 그 땅값을 물어주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 주는 것, 혹은 사람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 갔을 경우 그 몸값을 물어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것, ② 아들이 없이 죽어 계대(繼代)를 잇지 못하게 될 경우 미망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주는 것, ③ 사람이 피살되었을 때 살인자를 죽이므로 원한을 갚아 주는 것(레25:25-28, 47-49, 민35:12)이다. 물론 세 가지 모두 가숙 회의와 장로들의 공개 재판을 거쳐서 행해야 했다(룻4:8-10, 민35:12).

로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꼽을 수 있다.

### 5. 초대교회의 원리 : 나눔과 헌신, 희생의 원리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일종의 ‘자발적 원시공산공동체’이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기도에 전념하고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성령 충만케 되었고, 아가페적 사랑을 체험하였고, 진정한 나눔과 희생을 기쁨으로 동참하였다는 것이다. 그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은 첫째, 서로에게 헌신했고, 둘째, 그들은 모든 것을 나누었고, 셋째, 그들 중에는 궁핍한 자들이 없었다.

감염병이 창궐하면서 각국은 국가주의에 입각하여 국가의 이익을 앞세우기 시작하였고, 한 국가 내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더 타격을 입게 되었다. 한동안 자유무역주의가 주류였으나 이제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고 있고 더 나아가 보복까지 서슴지 않는 형국이다. 코로나19로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약소국가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한 국가에서도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 경제회복이 되더라도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K 자형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이러한 시기에 초대교회의 나눔과 헌신의 정신은 중요한 원리로서 다가온다.<sup>38)</sup>

38) ‘세계기부지수 2018’에 따르면 한국의 기부참여지수는 146개 조사대상국 중 60위로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19년도 조사에 따른 기부동기를 보면 사회적 책임감 > 동정심 > 종교적 신념 > 개인적 행복감 > 연말정산 등 세제혜택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wp-content/themes/bftheme\\_](https://research.beautifulfund.org/wp-content/themes/bftheme_)

이 원리는 현대에 와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세제도로 구현되고 있다. 현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 많다는 것은 바로 성경의 초대교회의 나눔과 희생의 원리를 현실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기본소득제도이나 재난기본소득제도 또한 이러한 원리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IV. 결 어

지금껏 서구는 개인주의적 인간이해를 선호해왔다. 그러나 기후변동이 임계점에 이른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동체적 인간이해가 필요하다.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되어 있다는 자각이야말로 외적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근본토대라는 것이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좋은 삶은 개인의 행복이나 자아실현의 개인선과 공동체 내지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공복리와 복지를 추구하는 공동선과 공공의 선 혹은 공익적 가치를 포함하는 다양한 선의 조화로운 실현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선과 공공의 선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한 개인적 선과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 전체의 공공복리와 복지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개인주의적 전통에서 있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공동선의 실현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

환경문제 혹은 지속가능성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각 개인의 만족과 환경의 확보는 일면 일치하는 면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개인은 개인의 이익 혹은 자신의 가치가 최대화가 되길 원하지만 모든 개인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에서 개인선과 공공선을 형량하여 만족을 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기후정의의 회복은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sup>39)</sup> 기후정의 회복의 주체는 국제기구, 국가, 지방자치단체, 환경소비자 모두이다. 이제 개인으로서 환경소비자는 그린슈머 트렌드에 발맞추어 친환경제품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환경오염 배출원을 가진 기업에 대해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비용부담

research/gk20th/download/gk\_korea\_data.pdf

39) 기후정의의 회복은 공동체주의적 정의 내지 공화주의적 정의와 관련된다. 개인의 합리성과 행복추구권에 기반한 자기결정권 내지 개인주의적 정의 관념은 기후정의 회복이라는 입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

및 비용전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결국 최종 부담자는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창조 이후 창조질서에 순응하지 않은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홍수를 준비한 것처럼 현대인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대형 삼림 화재 등을 통하여 동일한 경고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환경부도가 눈앞의 상황 이기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기후변화, 식량, 에너지 소비, 숲과 수자원 관리 등이 긴박한 신학적 문제가 된다. 그런데 성경은 기후위기를 맞은 인류에게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안식의 원리이다. 쉼과 창조질서에의 환원이다. 무질서한 개발이나 산업화, 도시화는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식량, 물 등 많은 문제를 배태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패러다임보다는 창조질서에의 환원을 위한 ‘안식’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가 동등하다는 것, 숲도 일정기간 휴식을 주면 복원되는 다누 것처럼 사람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회복의 원리이다. 치유와 회복의 원리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로 인하여 오늘날에도 개발도상국은 개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방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자본과 자원은 지구적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 회복의 원리는 그러한 불평등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다.

셋째, 만나와 오병이어의 원리이다. 즉 잉여와 낭비·남용의 금지 원리이다. 만약 전지구적으로 나눔이 실천된다면 현지보다 인류는 훨씬 공동선을 이루며 기후위기를 단시간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현재 배출거래제, 플라스틱제품의 사용 억제정책, 쓰레기 분리배출, 기업에 대한 환경오염 부담금 부과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친환경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 등의 개발도 필요하다.

넷째, 이삭의 원리 즉 나눔의 원리이다. 선진국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미미하다. 기후변화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선진국에서 기후위기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게 좀 더 나눔의 정신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탄소에너지 기술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며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초대교회의 원리이다. 즉 공동체 정신에 입각한 나눔과 헌신, 희생의 원리이다. 회복과 나눔은 동세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나눔까지를 포함한다. 단순히 수평적 평등이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평등, 세대간 평등을 말한다. 이제 인류는 지구의 생태계에 안식을 허락하여 원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

고 복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제 전 인류가 지구적 공동체라는 인식하에 ‘지구공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하여야 한다.<sup>40)</sup> 인간을 이익 창출을 위한 존재로 인식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관으로는 기후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소비주의를 숭상하는 시장제일주의를 죄로 인식 하며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고 믿는 생태적 인간이해가 필요한 때이다. 자연 세계에 대한 인간의 생태적 감수성을 높여야 할 때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지구 위에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적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이다. 결국 물러설 곳 없는 인류의 희망은 ‘성경’ (말씀)에 있다.

## 참고문헌

### ■ 단행본

김병권,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책숲, 2019.

남성현, 위기의 지구, 물러설 곳 없는 인간 - 기후변화부터 자연재해까지 인류의 지속가능한 공존 플랜, 21세기 북스, 2020.6.

박덕영외 2인,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 유엔기후체제, 국내법 및 통상법의 관점에서, 박영사, 2019.

이안 앵거스 편/김현우 등 공역, 기후정의- 기후변화와 환경파괴에 맞선 반자본주의의 대안, 이매진, 2012.

제러미 리프킨, 안전환 역, 글로벌 그린뉴딜, 믿음사, 2020.

존 롤스/황경식 역, 정의론, 이학사, 2003.

녹색전환연구소 역, 열 가지 그린뉴딜 어떻게 비교할까요.

파리협정 길라잡이 - 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계, 환경부, 2016. 5.

40)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조천호, 기후 위기,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 시선집중, GSnj(281), 2020.8.



■ 논문

- 김성배, 기후변화대응 정책과 법제도연구, 토지공법연구 제58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2.
- 김은혜, 기후변화와 생태위기에 대한 신학적 성찰: 새로운 인간주의를 향하여, 장신논단 제36집, 2009.12.
- 박병도,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정의, 환경법연구 제35권 2호, 2013.8.
- 박재묵, 환경정의의 개념의 한계와 대안적 개념화,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10권 2호, 2006.12.
- 박종원, 영국 기후변화법에 따른 기후변화적응체계와 그 시사점, 환경법연구 제38권 제2호, 환경법학회, 2016.
- 조천호, 기후위기,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 시선집중 GSnJ (281), 2020.8.
- 맹주만, 롤스와 센델, 공동선과 정의감, 철학탐구 32,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2.11.
- 송오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성경적 원리에서 해답을 찾다-, 종교문화학보 제17권 제2호,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2020.12.
- 오은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기독교 공동체의 역할, 종교문화학보 제14집,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2017.12.
- 오은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독교의 실천전략, 종교문화학보 제13집,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2016.12.
- 이사야, 구약의 땅과 사회윤리: 안식년과 희년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32호,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5.
- 이상돈, 환경정 이론에 관한 연구, 법학논문집 30권 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6.
- 이재율, 헨리 조지와 존 롤스의 분배적 정의론 비교연구-최근의 복지 논쟁을 중심으로-한국사회과학연구 31(1),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6.
- 이진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철학과 현실, 철학문화연구소, 1990.9.
- 장 신, 개도국 입장에서 본 파리기후변화협정의 협상 과정과 성과, 법학논총 제40집 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2.

조운재, 기후변화와 인권- 환경파괴 상황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 2019, 외법  
논집 제43권 2호.

조천호, 기후위기,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 시선집중 GSNJ(281), 2020.8.

최종호, 안식일에 대한 신학적 성찰, 신학사상 2008년 겨울호, 한신대학교 신학사  
상연구소, 2008.12.

하경택, 구약성경에 나타난 안식일 법- 하나님 닮아가기(imitatio Dei)로서의 안식  
일 준수, Canon&Culture 14(2), 2020.10.

한상운, 환경정의의 규범적 의미, 환경법연구 제31권 제1호, 2009.

한상운 외,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 I ), KEI(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2019.3.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5. 12. 관계부처 합동 작성

Stephen Humphreys, Competing Claims: 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 in  
Stephen Humphreys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Abstract

## Climate Justice and Biblical Justice

Song, Oh Sik

(Law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limate change has now become the priority issue with global impact more than anything else. This paper deals with the fact that climate change affects the survival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socio-economically vulnerable countries as well as person of same situation. Climate justice has historically been closely related to environmental justice. By extracting the characteristic elements of climate justice from the traditional theory of justice, it was argued that distributive justice and procedural justice are related to climate justice. In this paper, climate-related policies and laws were divided in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viewpoint and examined how they were implemented through them.

In Christianity, the kingdom of God is represented as a just one. Biblical justice appears to protect the socially disadvantaged, such as orphans, widows, strangers, the poor, the sick, and the marginalized. Many of the laws in the Old Testament as rules to protect the socially weak consist of ones of command and prohibition that should be practiced.

Therefore, this paper suggested five principles after exploring the principles to cope with the current climate crisis. That is, the principle of rest, the principle of jubilee, the principle of manna and the principle of five piece of bread and two fishes, the principle of ear of grain, and the principle of the early church. Such principles are the one of rest, recovery, sharing, prohibition of waste, and sacrifice. The principles make it possible to restore the original creation order. It is a community principle that can restore the global community.

**Key words** : Climate Change, Climate Crisis, Climate Justice, Environmental Justice, Biblical Justice, Distributional Justice, Procedural Justice

